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11월 20일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11/24) 언론 브리핑 직후 입법예고(11/25~1/5)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시행령 폐기 입장을 밝히고 폐기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동부 설명과 반대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부가 마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해줄 것처럼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자본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무기를 얻는 꼴입니다.

구시대 악법, 교섭권 무력화에 악용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의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교섭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회사가 어떤 노조와 어떻게 교섭할지, 전적으로 회사에 선택권을 쥐어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진작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고, 노조법 개정 이후 더욱 존재 가치가 없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정규직노조, 자회사노조, 사내하청노조가 존재하면, 3개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셈입니다. 절대 다수가 소수노조인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될리 없습니다. 원·하청노조 공동교섭이 성사되더라도 원청 자본과 정규직 노조의 주도력 아래 하청노조는 힘을 못쓰게 됩니다. 즉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직접교섭’은 불가능합니다.

일찍이 법원은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해 구체적 법률로 규율하지 않는 부분은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위배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꼴입니다.

노동부는 대안으로 기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때, 노동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이유로 다른 교섭단위로 인정하여 분리, 교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 자체가 엄격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를 수긍하지 않은 자본은 재판부로 쟁점을 끌고 갈 것입니다. 분리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절차가 중단됩니다. 자본은 교섭을 거부하면서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이탈시킬 시간을 벌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분리절차 과정에서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가)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섭상대, 교섭요구, 교섭방식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법 개정 취지가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대화’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면, 교섭을 둘러싼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과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구속력과 권위, 전문성이 없는 자문기구가 실질적 사용자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또 다른 분쟁을 만들고 노사는 교섭은 못한 채 지루한 소송전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섭 촉진자로 제 역할해야

때문에 우리는 노사관계는 자율의 영역이고, 교섭과 투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노사 자율의 영역을 과도하게 개입하고, 교섭권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회, 법원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원청 자본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원청교섭이 활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청 자본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법원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 원청 자본을 견인하고 압박해서 교섭자리에 앉히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 사회가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등한시하고, 대표 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시간끌기 소송전으로 친자본 로펌만 배부르게 하는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와 하청노조 교섭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행령 개정안 폐기 투쟁에 나선 이유입니다. 